

## 금융회사 등의 송달불능확인서 [초본 교부 신청용]

※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빠짐없이 작성하기 바랍니다.

신청 기관	회사명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/지배인	연락처
	소재지	
	방문자	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
열람·교부 대상자	성명 주소	주민등록번호

발급 번호: <제 호>

### 우편물 발송 확인서

관계 증명 자료	우편물 발송기관	기관명 대표자 대표전화번호
	송달 대상자	성명 주소 1차 발송일 2차 발송일
위와 같이 우편물 발송 사실을 확인함		
확인 기관 년 월 일 (인)		

신청 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열람·교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채무자 외의 사람이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신청 기관  
년 월 일 (인)

###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

첨부 서류

- 법인 인감 증명서
- 사용 인감계(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사용인감을 찍은 경우)

#### 유의 사항

- 이 서식은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별표2 제3호의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.
- 방문자는 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) 등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(또는 재직 증명서)을 제시해야 합니다.
- 「주민등록법」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·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
- 발급 번호가 적혀 있지 않는 우편물 발송 확인서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신청 및 확인 기관의 직인은 법인 인감(사용 인감 포함)을 찍습니다.(인감을 찍는 경우, 붉은 인주를 사용) 기관의 직인은 전자 이미지 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며,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붉은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.